

제 호

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

1. 상호:
2. 대표자 성명:
3. 대표자 주소:
4. 사무소 소재지:
5. 지정사항:
6. 업무 개시일:

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 상 청 장 직인